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급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시
도급인에게 최저임금 준수 의무 부과 〉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35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30일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계약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이 단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최저임금 미준수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도급인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는¹⁾ 사유에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함.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⑦ (생략)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 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 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 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u>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1) 제28조(벌칙)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도급인이 ①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거나, ②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춤으로 인해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²⁾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지시하였음에도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³⁾

현행법상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기존에 설정한 인건비 단가가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 도급인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기 곤란하다고 볼 것인데, 고용노동부도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아 계약 당사자간에 인건비 단가를 새로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왔음.⁴⁾

2)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3) 제28조(벌칙)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도급인의 최저임금 연대책임 여부(2012-03-09. 근로개선정책과-1676)

- 최초 용역계약시 최저임금이상으로 계약하였으나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용역비 인상

개정안은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기존의 계약 내용으로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이 곤란한 경우 이를 도급인이 조정하게 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부담을 도급인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가 실효적으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강행법규이므로 계약체결 이후 도급인의 귀책사유 없는 사정에 대해서도 연대책임과 위반 시 처벌을 규율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계약금액은 양자 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만을 범으로써 특정액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자유 등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바, 일률적으로 처벌을 규율하기보다는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취지를 고려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율⁵⁾할 수 있는 장치를 두도록 개별·구체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0

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도급인이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최초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최저임금제의 의의 및 도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인건비 단가를 새로이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예: 계약서에 경과규정(최저임금 인상 시 이를 고려해 계약금액 조정 등)을 두는 방식 등